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, 국립농업과학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1)을 삭제하고, 같은 표 2) 및 3)을 각각 1) 및 2)로 하며, 같은 표 3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9월 30일”을 “2023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1